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해당 시점의 적용이자율 + 가산금리 방식으로 결정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 5항 적용)			
연체율	<b>&lt;주택담보대출의 경우&gt;</b>		
	연체기간 경과시점별로 2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2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b>&lt;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경우&gt;</b>		
	연체기간 경과시점별로 1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1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최대 (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출실행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input type="checkbox"/> ( )년 거치후 (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상환		
한도유지수수료(한도거래시)	대출한도금액의 ( )%, ( )원 ⇨ 대출한도금액 x 한도유지수수료율 = 한도약정수수료		
상환수수료	부과기간/율	<input type="checkbox"/> 대출일로부터 ( )개월간 ( )% 부과 <input type="checkbox"/> 1년이후 만기까지 ( )%	
	부과방식	상환원금 * 부과율 * 부과기간잔존율 (*부과기간 잔존율 = 잔여부과일/총부과일)	
	일부면제유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부과기간내 대출금액의 ( )% 상환시까지 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납계좌	<input type="checkbox"/> 상동 <input type="checkbox"/> 기타(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납입일자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납입방법 자동이체(R/T수납 포함)
※대출자와 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를 경우 : 상기 본인계좌로부터 _____의 대출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_____(인)			
※은행 영업시간 마감後 ATM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제2조 이자율의 변경</b>		<b>■제5조 자동이체 제도 이용 등</b>	
1. 국고채(1년/5년)금리변동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5년마다, 해당 변경월 직전 1개월(1일~末日)국고채 3년의 평균금리와 이전 변경월(최초는 집행월)의 직전1개월(1일~末日)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금리에 가감합니다.		1.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2. 최초 3년(5년) 고정후 변동은 최초 3년(5년)간은 금리가 고정되며 이후 금리변동은 매6개월마다, 해당변경월 직전1개월(1일~末日)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와 이전변경월(최초 변동시는 집행월)의 직전1개월(1일~末日)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금리에 가감합니다.		①원금의 일부, 전액상환 및 연체시에는 회사에 직접 납입합니다.	
3. 변동형(COFIX) 금리변동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기준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금리에 가감합니다. 기준금리는 금리변동월의 직전 월에 은행연합회가 최종고시한 해당 COFIX 금리를 적용합니다.		②자동납입을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 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없기로 합니다.	
4. 고정형은 대출실행시 결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납입기일 현재 예금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는 즉시 회사에 납입하기로 합니다.	
<b>■제3조 지연배상금</b>		④자동이체 신청을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는 납입일 30일전까지 자동납입변경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이자, 분할상환원(리)금을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b>■제6조 상계</b>	
2.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사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채무의 변제가 도래하였거나,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해야 할 경우 회사는 대출자의 그 채무와 회사에 대한 체예치금(보험계약 환급금 등)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b>■제4조 인지세의 부담</b>		<b>■제7조 양도, 추심위탁</b>	
1. 약정서의 인지세는 각 50%씩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1. 회사는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 등에 양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별도의 약정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대출채무가 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화될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추심업무를 위탁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나 보증보험사 등에 양도 또는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b>■제8조 기타 특약사항(□ 해당란 체크 要)</b>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의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이 취소되는 경우 대출과정의 제반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 신용의 하락으로 인해 MCI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변제하도록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약정체결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을 벗어나거나, 신용관리정보 등록자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사의 심사승인 이후 45일 경과시 제심사하며, 신용도 하락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MBS스왑대출 등 유동화 관련 대출 중 경락대출에 한정하여 집행 후 3개월 내 전소유자 및 무권리세입자 퇴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 담보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자동차구입대출 실행시 대출금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사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실행 후 15일 이내에 본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자동차대환대출 실행시 대출금은 대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실행 후 다음 영업일까지 기존 대출기관의 채무상환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대출진행과정에서 녹취에 의한 약정 내용변경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대출의 경우 본 약정 제4조 2항에 따라 인지세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9조 토지취담보에 관한 특약 (토지 미등기건에 한함) < 토지 미등기 아파트(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본건 대출이 토지 미등기된 아파트(주택)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토지미등기 사유가 해소되어 본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회사가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9조에 동의함	본 인	(인)
-----------------	-----	-----

**■ 제10조 조건부 취급대출에 관한 특약**  
 본건 대출은 조건부로 취급되며 조건 미이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구분	<input type="checkbox"/> 투기지역 주택 처분조건부	<input type="checkbox"/>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상환조건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분대상	<input type="checkbox"/> 처분예정 주택 소재지:	처분기한	<input type="checkbox"/> 대출일로부터 2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상환대상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 <input type="checkbox"/> 담보 소재지 :	상환기한	<input type="checkbox"/>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 年 月 日)
위 특약사항 제10조에 동의함		본 인	(인)

대출금 수령권한 위임시	피위임인	생년월일/성별구분 ( - □*****)	관계
		사업자번호	
<b>피위임인에게 상기 약정에 의한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함</b>			
	위임인	(인)	
현금수령시	수령일자	수령인	(인)
담보물현황	주소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실 없음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실 있음(    세대    만원)		

※ 본인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의 대출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이후 대출금 지급전에 실시한 전입세대조사 결과 미확인,비임차,임차 전입세대 등 상기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불가함을 인지합니다.  
 이 경우 대출 과정중 발생한 제비용(설정관련 제비용, 전입세대조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한 담보부동산 매매시 사전 통보 및 회사의 승낙절차를 거쳐 피담보채무 범위를 재확정받아야 함을 인지합니다.

**■대출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세요.**

1.본인은 위 약관과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본인은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에 본인이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대출의 대가로 보험가입을 강요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합니다.		
① 본인은 대출실행일 前 1개월 이내에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본인은 대출실행일 後 1개월 이내에 삼성화재 장기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또한, 본인이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 계약은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에 해당이 없으며,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임]을 확인합니다.		

대출자 (인)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대출고객 연락처	
※ 대출지급前 확인안내를 위한 고객님의 연락처를 기재바랍니다.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오른쪽 빈칸에 √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1.대출계약 체결전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2.대출모집인은 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나요?			
3.대출관련하여 상담사로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으셨나요?			
4.보험가입은 대출성사를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니며 대출과 연계하여 권유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5.상담사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회사가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나요?			
6.상담사로부터 귀하의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및 번계계획 등 고려, 적합한 대출상품을 권유받으셨나요?			
7.상담사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8.본 대출은 타인의 대출권유 등 대출사기와 무관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9.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 분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인	(인)	대출상담사	(인)
추천 RC명		RC코드	
추천중개업소		중개업소주소	시    군/구    동/읍    대표자명
※ 상기 기재된 중개업소의 추천견임을 확인합니다.		대출상담사	(인)    센터장    (인)

■자동차구입대출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본인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바랍니다.

- 1.자동차구입대출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2.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차대출은 카드대금 결제일부터 시작됨]을 확인합니다.
- 3.자동차구입대출을 카드 결제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일까지 납부]하기로 합니다.

서류접수권한 부여전 심사 Check		(√로 해당칸에 표시)		
		YES	NO	해당없음
A. 서류접수 담당자				
1.대출자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징구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자동차: 운전면허증)				
2.대출자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인감도장날인과 동일여부를 확인				
B. 용자지점 담당자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확인				
1.대출자 및 소유자 신분증 인터넷(행자부/경찰청 Site)상 진위 여부 확인				
2.대출자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진위 여부 확인				
■ 대출자 확인				
3.대출신청 고객의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여부 유선 확인				
4.3개월 이상 거래된 지급통장 징구 여부 확인(자동차: 판매사 또는 금융사 계좌)				
■ 담보물 및 실거주자 확인				
5.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담보 권리관계 확인(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6.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신용정보회사의 세대방문 조사 실시(자동차: 권리조사)				
■ 서류접수자 권한 확인				
7.서류접수자의 서류접수자격 유지 확인				
확인자		확인일시		
※ 대출일 이후 상담문의는 1588-74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첨부란

대출금	● 5천만원이하 면제	● 1억원이하 7만원
	● 10억원이하 15만원	● 10억원초과 35만원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남대문세무서장  
후남승인  
2002년8호

이 설명서는 회사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 계약서류,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거래약정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1. 상품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상품명 :		■ 대출기간 : (    )년 중 거치기간 (    )개월
■ 대출신청금액 :	_____ 원	■ 담보종류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input type="checkbox"/> 신용
■ 적용예정금리 :	_____ % (금리적용방식: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고정 <input type="checkbox"/> 혼합)	

### 2. 거래구분

- 개별거래 : 약정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 한도거래 : 약정한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개별거래에 비해 상품마다 별도 가산금리가 부과되어 금리수준이 높음)

### 3. 대출이자율

- 대출금리의 주요한 결정요인  
기준금리 또는 조달금리에 고객신용도별 가산금리를 부과하며, 업무지원비(영업비, 인건비, 사후관리비 등)와 영업점의 가감금리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된 대출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예시

- ▶ 3년(5년) 고정형: 최초 3년(5년)간 금리가 고정되며 이후 해당변경월 직전1개월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와 이전변경월의 직전1개월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 차이를 가산금리에 적용하여 매 6개월마다 변경됩니다.
- ▶ 1년(5년)단위 변동형: 최초 1년(5년)간 금리가 고정되며 이후 해당변경월 직전1개월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와 이전변경월의 직전1개월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 차이를 가산금리에 적용하여 매 1년(5년)마다 변경됩니다.
- ▶ COFIX 연동금리: 해당변경월 기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액기준COFIX」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매 6개월마다 변경됩니다.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금리상승시 부담액 증가 예시]

대출금 1억원 인 경우, 금리 1%상승시 연간 100만원, 월 83,333원의 이자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 및 담보유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심사시점에 결정되므로 약정체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가계대출 사용 고객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객이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유선,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 통지 시 그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 ■ 금리인하 요구 사유

소득상승, 신용등급 개선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 연간 2회 한정)

#### ■ 접수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비롯한 제반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금리인하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출콜센터 1588-7444(→1번)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 4. 수수료 등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부과기간 : 대출일로부터 (    )년 (    )%

- 부과방식 : 상환원금 \* 부과율 \* 부과기간잔존율

( \* 부과기간 잔존율 = 잔여부과일/총부과일)

예) 총 365일 부과, 200일째 상환시 부과기간 잔존율은

$$(365-200)/365 = 45.2\%$$

- 상환율 면제조건: 위의 중도상환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금액의 (    )% 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대출약정 체결전에 미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조건 및 면제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도유지수수료 : 대출(한도)금액의 (    )%인 (    )원

#### ■ 금저당설정비용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회사가 부담

·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이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이 부담

- 기타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원은 고객과 회사가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주소변경 또는 확인서면: 고객 부담 (법무사 기준 보수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면제	10억원 이하	15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단, 특약에 따라 회사가 전액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화재보험료(가입필요 물건 한정) : 고객 부담
-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조사비(전입세대열람 및 현장조사) : 회사 부담
- 기타비용 : (항목)\_\_\_\_\_, (금액)\_\_\_\_\_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심사과정상 대출취급 거절사유 발생시, 회사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비용 전체(설정/말소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대출범위, 행사횟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제외대상 대출범위  
-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보험계약대출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제한  
- 당사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대출계약 철회 효력발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해당 대출과 관련된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를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접수방법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 신분증 등 제반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대출계약 철회 가능여부, 신청 프로세스를 안내해드립니다.  
대출콜센터 : 1588-7444(→1번)

5. 이자 납입방법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 최초대출이자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 그 후의 이자는 납입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이내 납입합니다.
- 이자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납입일(원금 분할상환을 선택할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등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 이체불가 사유로 회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때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6. 대출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식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상환
- 분할상환방식 : 대출개시일로부터 당월 또는 일정기간동안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기타 상환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7. 유의사항

- 자동차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 대출의 제한

- 회사의 대출금(연대보증 채무 포함) 연체증인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자, 신용관리정보 등록자 및 회사가 정한 사유로(약정체결 이후 신용등급의 하락 등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대출금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LTV, DTI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가계용)

- 「이자 또는 매월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 또는 매월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기로한 날의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전의 채무 변제외부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로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잔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 연체이자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회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관리정보 등록 등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제에치금(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제7조 제1항에서 정한사유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고 7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모든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 대한 수개의 대출채무중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사유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정하여 특촉·통지기간 경과시 모든대출금 [단, 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 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변경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다만,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접수 및 신청 이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 담보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회사에 신고후 회사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승낙 매수인이 잔여채무를 연체하고 담보물의 처분가가 회수액에 미달 하는 경우 회사는 매도인에게 잔여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였더라도 매도인의 기타 채무연체를 사유로 회사는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을 강제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신용상태, 심사기준, 법률 및 외부규정 제한 등에 의해 승낙이 불가할 수 있으니 담보부동산 매매 전에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및 연체정보 등록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및 연체정보 등록  
다음의 신용정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활용됩니다.

-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직업
- ② ‘연체 등’ 정보 : 대출금 등의 연체사실
- ③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황, 보증현황 등

■ ‘연체 등’ 정보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연체정보 공유

영업일기준 연체5일 초과시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되어 금융기관에 공유되며 거래 금융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복이 1년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 금리변경방식 선택시 유의사항

■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대출’의 이자부담 위험 증가

- 변동금리 대출 또는 혼합형 대출 등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시 월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의 이자소득공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 사항

신용공여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이나 형태의 신용공여일수록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이 대출설명서는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가계용 대출약정서’ 등 계약서류에서 규정한 이자, 연체 이자(지연배상금), 기한이익상실, 수수료등 비용(중도상환 수수료, 근저당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 대출 부대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출거래 약정 체결 전 제공되는 요약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대출상품설명서 교부 이후에 대출신청금액 등의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거래약정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 계약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개별 상품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함)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대출모집인)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 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_\_\_\_\_ (서명/인)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_\_\_\_\_ (서명/인)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유자콜센터(1588-744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http://www.samsungfir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추가약정서 [개인금융신용보험]</b>	 <small>Your Best Credit Partner</small> <b>SGI서울보증</b>
-------------------------	--

본인은 년 월 일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_Auto-Loan\_ 대출거래약정』(이하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이하 "보증보험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보증보험사가 영위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조건부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제2조(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시 조치내용)** ①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상환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본인은 제1항의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신용보험 계약에 의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본인이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채권양도·양수의 승낙)** 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지 또는 승낙없이 본 약정서의 체결로써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보증보험사에게 양도함을 승낙한다.

**제4조(보험금 지급후의 채무변제)** ①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보증보험사에게 즉시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②본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보증보험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1. 채권보전, 이전 및 소송, 경매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2. 기타 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본인은 보증보험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본인이 변제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약정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2항의 비용,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신용정보의 제공)** 본인은 제2조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가 본인의 보험사고 내용을 금융기관 등 여타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6조(관할법원)** 보증보험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사의 \_\_\_\_\_ 개인고객 \_\_\_\_\_ 부점(본점·본부·지점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반환기준 등)** ①회사가 담보물의 처분 등에 따라 채권회수를 한 후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동 금원이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실제 반환할 때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한 후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을 곱하여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반환한다. 다만 각 금원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에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회수를 한 후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 회사는 회수금원에 대하여 채권회수일의 익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 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보증보험사를 대리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가) 체결한 것이다.

본인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년    월    일		
<b>대출취급 금융기관</b>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융기관)	<b>신용보험계약 체결기관</b>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b>본    인</b>	(서명 또는 인)		

# 대출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동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대출계약 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의 신용등급이 無 등급이거나 대출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5114)를 통해 철회하거나 대출계약 상담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 관련 계약의 상담, 계약체결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유지·사후관리
- 보증계약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은 여신거래의 설정 여부판단 및 유지·이행·관리 등을 위한 목적
-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등급, 타금융기관 채무 조회
-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채무현황, 신용카드한도 및 이용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직업, 채무, 소득 총액, 납세실적 등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 등
- 당사 및 신용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당사와의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의 판단, 신용관련 통계모형의 개발 및 분석, 본인확인(인증)  
※ 조회대상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원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서 보유한 대출·카드개설 등의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평점),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대출계약의 청약 시까지(최대 3개월)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업무수탁자 등 : 대출모집인, 설계사, 법무사, 감정평가법인, 임대차현황조사기관(신용정보회사), 전자문서공인인증기관(KTNET), 위탁콜센터, 정보처리위탁사, 우편물위탁사
- 권원보험사 등 : 권원보험사(KB 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권원보험사로부터 조사/대위권 행사 등을 위탁받은자 (바이릿지, 리파인, 법무법인, 임대차현황 조사기관 등)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의 관리,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대출계약 및 대출거래 관련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회사(집중기관)의 업무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거래관계 설정, 관리, 상담
- 권원보험사 등 : 권원보험의 인수, 대위권·구상권행사 또는 채권매수와 관련된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등)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20          년          월          일

대출 신청자	(인)	담보제공자	(인)
배우자(소득합산시)	(인)	以外(세대원 등)	(인)
以外(세대원 등)	(인)	以外(세대원 등)	(인)
以外(세대원 등)	(인)	以外(세대원 등)	(인)

#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동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대출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의 신용등급이 無 등급이거나 대출실행이 되는 경우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출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담, 조사연구(리서치), 기타 위탁사무 수행
- 금융거래 관련 업무[대출금 지급·이체(자동·R/T이체 포함), 이체계좌 관련 신청·해지·변경 등]
- 기존 계약자에 대한 대출계약 상담(당사, 당사 대출상담사 및 설계사에 한함)
- 분쟁대응 및 민원처리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적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권원보험의 가입 및 보험사고 발생시 권원보험의 청구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 관련 업무 수행
-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채무현황, 신용카드한도 및 이용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 재산, 직업, 채무, 소득 총액, 납세실적 등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된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 등
- 당사 및 신용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사고조사, 금융사고방지,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대출실행 여부 결정,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유지·사후관리 및 내부분석용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서 보유한 대출, 카드개설 등의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평점),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후에는 금융사고조사, 금융사고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재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포함), 금융결제원, 한국주택공사
- 업무수탁자 등 : 대출모집인, 설계사, 법무사, 감정평가법인, 임대차현황조사기관(신용정보회사), 전자문서공인인증기관(KTNET), 위탁콜센터, 정보처리위탁사, 우편물위탁사
- 권원보험사 등 : 권원보험사(KB 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권원보험사로부터 조사/대위권 행사 등을 위탁받은자 (바이릿지, 리파인, 법무법인, 임대차 현황 조사기관 등)
- 전자공인인증기관 및 전자등기대리인 : KTNET((주)한국무역정보통신), 업무수탁 법무사(변호사)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기관 : 대출계약, 대출 거래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대출원리금 입·출금 업무
-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사업자 포함)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거래관계 설정, 관리, 상담
- 권원보험사 등 : 권원보험의 인수, 대위권·구상권행사 또는 채권매수와 관련된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 거래종료일 : ① 보험(대출)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각종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대출 신청자	(인)	담보제공자	(인)
배우자(소득합산시)	(인)	以外( )	(인)

# 상품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선택동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는 보험 및 대출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5114)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의 Do not Call 센터(www.donotcall.or.kr)를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시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보험, 대출 등)상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가입권유 연락방식 선택	전체 <input type="checkbox"/> , 전화 <input type="checkbox"/> , 문자메시지 <input type="checkbox"/> , 우편 <input type="checkbox"/>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대출계약 정보

### •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당사와 보험·대출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동의하지 않음
- 당사와 보험·대출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2년(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상품소개 및 홍보 등 영업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를 위한 제공 목적별 개인정보 제공처		
목적	제공받는 자	
당사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당사와 위탁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단, 비전속대리점의 경우,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모집수탁자 :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업무수탁자 : 판촉물 배송 등 수탁업무 수행

###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모집수탁자 및 업무수탁자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모집수탁자 : 당사와 보험·대출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보유·이용 기간  
당사와 보험·대출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단, 비대면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이내)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www.samsungfire.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법정대리인 : (인)

#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 동의서



서울보증보험(주) 귀중

##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가 신용등급 무등급자인 경우 제외합니다).
-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670-7000)를 통해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상담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 관련 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 통계업무 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 법령상 의무이행
-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상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및 보증대상 계약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된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 ※ 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보험계약 관련 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본인 확인(인증)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 및 채무보증현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관련된 발생사실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기간

- 동의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최대 3개월)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적절한 경로로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당사의 해외지점 및 사무소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 법령에 따른 검사·감사기관,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의 관리,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보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확인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등)
- 청약 상담한 보험계약 관련 정보
- ※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의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목적 달성할 때까지(청약 상담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최대 3개월)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일자	동 의 인	법정대리인
20    년    월    일	(인)	(인)
		(인)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 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개인금융성 신용보험용)



서울보증보험(주) 귀중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가 신용등급 무등급자인 경우 제외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채결·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심사
-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상담    ○ 보험 모집·질서 유지    ○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당사 및 당사 모집인에 한함)    ○ 통계처리(모형 개발, 효율 산출 및 검증 등)    ○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및 보증대상 계약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된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자동차보험계약정보, 신용등급(평점),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보험료 출·수납을 위한 계좌번호
- ※ 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 ※ 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해지·해제·취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 채권의 변제·소멸시효 완성·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아래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채결·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심사
-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상담    ○ 통계처리(모형 개발, 효율 산출 및 검증 등)    ○ 본인 확인(인증)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 및 이와 관련된 거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된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자동차보험계약정보, 신용등급(평점)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당사의 해외지점 및 사무소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회사(코피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및 교환,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 및 이와 관련된 거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된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2) 법률상 업무 수행 및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 법령에 따른 검사감사기관,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법원, 1인 창조관련 상품의 경우 창업진흥원 포함)
- 금융기관 : 국내외 재보험사(공제사업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채권추심업체, 변호사 등 법무 수행자, 우편물 및 지로 발송업체, 문서 파기업체, 문자 발송업체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의 관리업무 수행
- 금융기관 :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등 재보험업무, 보험료·보험금의 출·수납
- 업무수탁자 : 본 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중 제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일자	동 의 인	법정대리인
20    년    월    일	(인)	(인)
		(인)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출금이체 신청서 ( 자동이체 R/T )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대출번호(납부자)			
채무자		생년월일 (주민번호앞6자리)	
예금주명		관계	
예금주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 연락처	
이자지급일		채무자(신청인)연락처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편뱅킹) 출금이체를 통한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편뱅킹)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CMS/편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편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편뱅킹)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객님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여신거래 추가약정**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제 약정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 외에 다음의 내용이 적용됨을 약정합니다.

1. 대출원리금 상환(연체이자) 납입 시 은행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납입할 경우 당사에 등록된 자동이체통장 혹은 본인 명의의 제 3의 통장에서만 가능하다.
2.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약속 인출일에 인출시도를 하였으나 잔고부족, 타행수표 입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원리금 인출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 인출이 발생한 날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재, 타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인한 본인의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예금주: \_\_\_\_\_ (인)

# 여신거래 기본약관 가계용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주택자금,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모든 가계용 여신거래에 적용됩니다.

## 제2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 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절한 시일 내에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여신취급 창구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연 배상금 율 등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3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존(해지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독촉 및 통지 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이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대출약정의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일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3조의 2(대출계약의 철회)

-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보험계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통화 대상 대출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 ④ 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⑤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제4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약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 제6조 (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제예치금(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② 아래 각 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기한이익상실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지체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6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양도, 변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매일 또는 간헐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어 회사가 보증인의 교체를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 교체에 응하지 아니한 때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 제7조의 2(보험계약자에 대한 우대)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자율, 담보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제9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 기타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합니다.)을 상계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제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채권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 채무의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일부변제, 일부상계와 충당)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9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잔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잔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잔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정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잔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으로 회사의 채권보정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의사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정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사고의 처리)

- ① 채무자 회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 손상, 멸실의 경우에 회사에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나 기타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종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④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 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강,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제13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통지의 효력)

- ①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회사가 서명통지 또는 기타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명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도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16조 (조사협조)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회사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7조 (이행장소, 준거법)

-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 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 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 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제18조 (약관, 부속약관변경)

-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됩니다.
- ②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서 알리고, 그 밖에는 여신취급창구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3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9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따른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안)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 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등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 서울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삼성화재) 또는 각 대출센터  
○ 전화 : 1588-5114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서면 : 서울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삼성화재) 또는 각 대출센터  
○ 전화 : 1588-5114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신청장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 서울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삼성화재) 또는 각 대출센터  
○ 전화 : 1588-5114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마. 본인정보의 무료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http://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 02-3786-4000 인터넷 [www.kisinfo.co.kr](http://www.kisinfo.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 02-1577-1006 인터넷 [www.sci.co.kr](http://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http://www.kcb4u.com)

###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 02-758-7669/ 서울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삼성화재)
- 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 담당자  
☎ 02-3702-8544/서울 중로 5길(수송동, 코리아리 빌딩)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 담당자  
☎ 02-3786-8404/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신용정보실